

현대카드 가맹점 수기특약서

2020년 3월 현재

현대카드 주식회사(이하“갑”이라 함)와 (리얼 컴) (이하“을”이라함) 간에 체결한 가맹점 계약에 추가하여 아래사항을 별도로 특약한다.

제 1 조 (적용범위)

본 특약에 의거한 “을”의 신용판매 범위는 “갑”이 발행한 신용카드를 소지한 자에 대한 “을”의 신용판매에 한한다.

제 2 조 (거래승인)

“을”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“갑”의 거래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동 거래승인의 의미는 카드의 유효성 및 결제 능력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거래의 진위성 및 본인 사용 여부의 확인은 “을”의 책임으로 한다.

제 3 조 (특약 보증)

담보종류 : 보증금액 : 신용판매한도(월간) :

- 1) 본 특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“을”은 “갑”이 정하는 특약 보증금을 “갑”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- 2) 제1)항의 특약 보증 방식은 ()으로 한다.
- 3) “갑”은 “을”의 판매신용도 및 신용판매실적, KEY-IN한도, 민원접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 1)항의 계약담보의 증액 또는 새로운 담보를 추가 요구할 수 있으며 “을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특약 및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4) “을”은 제1)항의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“손실보증금”에 대한 이자 등을 “갑”에게 따로 청구하지 아니한다.
- 5) 제1)항의 계약담보는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갱신된 담보를 “갑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6) “을”이 본 특약에 근거하여 현금 또는 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“갑”의 지급보류 등의 방식으로 “갑”에게 담보금을 납부한 경우 “을”은 이를 제3자에게 채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등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
제 4 조 (계약담보 환원)

본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가맹점과의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“갑”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“갑”의 회원으로부터 이익제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 계약 해지일 익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계약담보를 “을”에게 환원할 수 있다.

제 5 조 (손해발생 시의 책임)

- 1) “을”은 신용카드 거래 시 해당카드의 이상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오류 거래승인 건에 대한 책임을 진다.
 - 2) “을”이 “갑”에게 전송한 신용카드 판매내역이 다음 각 호 중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“갑”은 그 신용카드 판매내역을 비정상적인 거래내역으로 간주하여 동 매출에 대하여 동 매출 취소 또는 다음 회차 청구금액에서 손해배상금액에 대한 변제·충당 등을 위하여 대금지급을 보류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의 위반 내용에 따라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또한, 이로 인하여 “갑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“을”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 - ①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판매대금을 “갑”에게 청구한 경우
 - ② “을”이 허위로 매출표를 작성하여 신용카드 판매대금을 “갑”에게 청구한 경우
 - ③ 기타 “을” 물품 판매와 관련한 각종 소비자민원으로 “갑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
 - ④ “을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제1항 각 호 가맹점 표준약관 제1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의해서 “갑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.이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및 가맹점 표준약관 제1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“갑”이 부담한다.
 - ⑤ “을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(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)로 “을”이 취급하는 해외 카드 거래에 의해서 발급사로부터 부도가 접수되어 “갑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. 이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입증 책임은 “갑”이 부담한다.
- 가. 회원의 사용 부인에 의한 부도 접수 시 거래증표(매출표)를 제시하지 못하거나, 전자인증을 득하지 않은 경우
- 나. 가맹점이 판매 대상 물품을 회원에게 배송하지 않거나 제공 대상서비스를 회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
- 다. 가맹점이 회원의 취소 요청 등에 대해 환금의사를 표명하고 환금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- 라. 가맹점이 거래금액을 이중으로 청구하거나 거래금액을 상이하게 청구한 경우
- 3) “갑”은 “갑” 또는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“을”이 배상을 못하였을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.
-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신용판매대금과의 상계
 - ② “손실보증금”과 상계

- 4) 본 특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모든 책임은 원인제공 당사자에게 있으며 원인제공자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부도반환)

- 1) “수기특약”에 의한 카드매출 후 “을”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회원의 민원(철회원, 항변권 등)이 제기될 경우 “을”은 즉시 해결해야 한다.
- 2) 회원이 이익제거(주문사실 부인, 물품불만족에 따른 반환 등) 또는 주문판매 취급과정에서 “을”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“갑”은 “을”이 청구한 대금에서 해당금액만큼을 우선적으로 차감하여 지급하며, 차감금액 부족 시 차회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 7 조 (수기작성 및 무서명 매출전표 인정)

“을”은 “갑”이 제공하는 매출전표 상에 수기로 회원성명, 카드번호, 유효기간, 거래일자, 승인번호, 가맹점번호, 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하고 회원이 직접 서명을 득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신용판매본과 동일한 매출표로 인정한다.

제 8 조 (매출표의 접수)

- 1) “을”은 본 특약이 적용되는 판매분의 매출표 접수 시, 본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판매분의 매출표와 구분하여 접수시켜야 한다.
- 2) “을”은 매출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제5조에 따라 수기작성된 매출표 또는 “갑”이 정한 양식과 해당 주문판매내역서를 첨부하고 대표이사의 인감을 날인하여 “갑”에게 청구한다.
- 3) 전항 외에 전자데이터로 매출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별도의 해당업무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다.
- 4) 전자접수(EDI) 시에는 반드시 당사가 제공하는 본인인증 서비스를 사용하여야 한다.

제 9 조 (대금지급)

- 1) “을”이 “갑”에게 제출한 매출전표는 매입, 심사 후 “갑”의 대금지급 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2) “갑”이 회원에게 청구한 이용대금에 대하여 “을”의 무서명 수기작성으로 인하여 회원이 카드사용을 불인정할 경우 및 기타 민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“을”이 직접 전적으로 책임지며 “갑”에게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.

제 10 조 (변경 및 해지)

- 1) 본 특약을 변경·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“갑”과 “을”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.
- 2) “갑”과 “을”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서면통보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① 갑과 을이 본 특약의 준수사항을 태만히 하여 업무진행이 불가한 경우
 - ② 갑과 “을”의 신용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
 - ③ 갑과 “을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
 - ④ 상대방의 계약 위반 내용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
 - ⑤ 을이 거래한 회원으로부터 민원이 다량 발생하는 경우
 - ⑥ 을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련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가맹점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
 - ⑦ 갑과 을이 법정관리 및 화의 개시신청을 한 경우
 - ⑧ 을이 발행한 어음 등이 지급거절되거나 부도 처리된 경우
- 3) “갑”은 필요에 따라 계약 해지가 아닌 월한도 하향조정, 가맹점 수수료 상향조정, 보증금의 상향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 11 조 (유효기간)

본 특약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, 특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변경 또는 해지 요청이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.

제 12 조 (우선적용)

본 특약이 가맹점 규약과 배치되는 경우에는 본 특약이 우선한다.

제 13 조 (정하지 아니한 사항)

본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맹점 약관이 적용되며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“갑”과 “을” 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본 특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특약서 2부를 작성, “갑”과 “을”이 서명,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년	월	일
(갑)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 현대카드주식회사		
대표이사 정 태 영		
(을)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판매동 7층 A034 리얼컴		
대표 최 진 만		

현대카드 주식회사(이하 "갑"이라 함)와 (리얼컴) (이하 "을"이라 함) 간에 체결한 가맹점 계약에 추가하여 아래사항을 별도로 특약한다.

제 1 조 (적용범위)

본 특약에 의거한 “을”의 신용판매 범위는 “갑”이 발행한 신용카드를 소지한 자에 대한 “을”의 신용판매에 한한다.

제 2 조 (거래승인)

“을”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“갑”의 거래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동 거래승인의 의미는 카드의 유효성 및 결제 능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거래의 진위성 및 본인 사용 여부를 확인은 “을”의 책임으로 한다.

제 3 조 (특약 보증)

담보종류 : 보증금액 : 신용판매한도(월간) :

- 1) 본 특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"을"은 "갑"이 정하는 특약 보증금을 "갑"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- 2) 제1)항의 특약 보증 방식은 ()으로 한다.
- 3) "갑"은 "을"의 판매신용도 및 신용판매실적, KEY-IN한도, 민원접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 1)항의 계약담보의 증액 또는 새로운 담보를 추가 요구할 수 있으며 "을"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특약 및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4) "을"은 제1)항의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"손실보증금"에 대한 이자 등을 "갑"에게 따로 청구하지 아니한다.
- 5) 제1)항의 계약담보는 유효기한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갱신된 담보를 "갑"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6) "을"이 본 특약에 근거하여 현금 또는 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"갑"의 지급보류 등의 방식으로 "갑"에게 담보금을 납부한 경우 "을"은 이를 제3자에게 채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등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
제 4조 (계약담보 환원)

본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가맹점과의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“갑”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“갑”의 회원으로부터 이익제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 계약 해지일 익월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계약담보를 “을”에게 환원할 수 있다.

제 5 조 (손해발생 시의 책임)

- 1) "을"은 신용카드 거래 시 해당카드의 이상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오류 거래승인
건에 대한 책임을 진다.
- 2) "을"이 "갑"에게 전송한 신용카드 판매내역이 다음 각 호 중의 1에 해당하는
경우에는 "갑"은 그 신용카드 판매내역을 비정상적인 거래내역으로 간주하여 동 매출에
대하여 동 매출 취소 또는 다음 회사 청구금액에서 손해배상금액에 대한 변제·충당 등을
위하여 대금지급을 보류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의 위반 내용에 따라
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또한, 이로 인하여 "갑"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"을"은
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①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판매대금을 "갑"에게 청구한 경우
② "을"이 허위로 매출표를 작성하여 신용카드 판매대금을 "갑"에게 청구한 경우
③ 기타 "을" 물품 판매와 관련한 각종 소비자민원으로 "갑"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
④ "을"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제1항 각 호 및 가맹점 표준약관
제1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의해서 "갑"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.
- 이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및 가맹점 표준약관
제1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"갑"이 부담한다.
- ⑤ "을"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(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)로 "을"이
취급하는 해외 카드 거래에 의해서 발급사로부터 부도가 접수되어 "갑"에게 손해가 발생한
경우. 이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입증 책임은 "갑"이 부담한다.
- 가. 회원의 사용 부인에 의한 부도 접수 시 거래증표(매출표)를 제시하지 못하거나, 전자인증을
득하지 않은 경우
- 나. 가맹점이 판매 대상 물품을 회원에게 배송하지 않거나 제공 대상서비스를 회원에게
제공하지 않은 경우
- 다. 가맹점이 회원의 취소 요청 등에 대해 환급의사를 표명하고 환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- 라. 가맹점이 거래금액을 이중으로 청구하거나 거래금액을 상이하게 청구한 경우
- 3) "갑"은 "갑" 또는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"을"이 배상을 못하였을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
처리 할 수 있다.
-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신용판매대금과의 상계
② "소식보충금"과 상계

- 4) 본 특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모든 책임은 원인제공 당사자에게 있으며 원인제공자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부도반환)

- 1) “수기특약”에 의한 카드매출 후 “을”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회원의 민원(철회원, 항변권 등)이 제기될 경우 “을”은 즉시 해결해야 한다.
- 2) 회원이 이의제기(주문사실 부인, 물품불만족에 따른 반환 등) 또는 주문담당 취급과정에서 “을”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“갑”은 “을”이 청구한 대금에서 해당금액만큼을 우선적으로 차감하여 지급하며, 차감금액 부족 시 차회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 7 조 (수기작성 및 무서명 매출전표 인정)

“을”은 “갑”이 제공하는 매출전표 상에 수기로 회원생명, 카드번호, 유효기간, 거래일자, 승인번호, 가맹점번호, 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하고 회원이 직접 서명을 득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신용판매분과 동일한 매출표로 인정한다.

제 8 조 (매출표의 접수)

- 1) "열"은 본 특약이 적용되는 판매분의 매출표 접수 시, 본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판매분의 매출표와 구분하여 접수시켜야 한다.
- 2) "열"은 매출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제5조에 따라 수기작성된 매출표 또는 "갑"이 정한 양식과 해당 주문판매내역서를 첨부하고 대표이사의 인감을 날인하여 "갑"에게 청구한다.
- 3) 전항 외에 전자데이터로 매출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별도의 해당업무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다.
- 4) 전자접수(EDI) 시에는 반드시 당사가 제공하는 본인인증 서비스를 사용하여야 한다.

제 9 조 (대금지급)

- 1) “을”이 “갑”에게 제출한 매출전표는 매입, 심사 후 “갑”의 대금지급 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2) “갑”이 회원에게 청구한 이용대금에 대하여 “을”의 무서명 수기작성으로 인하여 회원이 카드사용을 불인정할 경우 및 기타 민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“을”이 직접 전적으로 책임지며 “갑”에게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.

제 10 조 (변경 및 해지)

- 1) 본 특약을 변경·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“갑”과 “을”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.
- 2) “갑”과 “을”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서면통보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① 갑과 을이 본 특약의 준수사항을 태만히 하여 업무진행이 불가능한 경우
 - ② 갑과 ‘을’의 신용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
 - ③ 갑과 ‘을’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
 - ④ 상대방의 계약 위반 내용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
 - ⑤ 을이 거래한 회원으로부터 민원이 다량 발생하는 경우
 - ⑥ 을이 여산전문금융업법 및 관련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가맹점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
 - ⑦ 갑과 을이 법정관리 및 회사의 개시신청을 한 경우
 - ⑧ 을이 발행한 어음 등이 지급거절되거나 부도 처리된 경우
- 3) “갑”은 필요에 따라 계약 해지가 아닌 월한도 하향조정, 가맹점 수수료 상향조정, 보증금의 상향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 11 조 (유효기간)

본 특약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, 특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변경 또는 해지 요청이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.

제 12 조 (우선적용)

본 특약이 가맹점 규약과 배치되는 경우에는 본 특약이 우선한다.

제 13 조 (정하지 아니한 사항)

본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맹점 약관이 적용되며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“갑”과 “을” 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본 특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특약서 2부를 작성, “갑”과 “을”이 서명,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이
아
이

(갑)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 현대카드주식회사

대표이사 정 태 영

(을)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판매동 7층 A034 리얼컴

대품 최진만



